

「특성화추진위원회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1. 12. 1. 제정 판 (시행 2011. 12. 1.) → 2016. 8. 29. 개정 판 (시행 2016. 8. 29.)

바뀜 8 · 신설 3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84/compare?from=694&to=697> · 내려받은 때 2026. 10. 22. 오후 4:17:25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u>삼육대학교 대학특성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성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u>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되며,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위원급 또는 개별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제3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필요에 따라 재임할 수 있다.
제4조 1. 대학의 특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특성화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학특성화 선정 심의 및 중점특성화 지정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사업단장 재청 및 운영위원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계약직원 및 연구원 채용에 관한 사항 6. 개별 사업단의 사업계획 심의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 7. 개별 사업단의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점검 및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8. 특성화 사업비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개별 사업단의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및 자체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10. 특성화 관련 재정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특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특성화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학특성화 선정 심의 및 중점특성화 지정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사업단장 재청 및 운영위원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계약직원 및 연구원 채용에 관한 사항 6. 개별 사업단의 사업계획 심의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 7. 개별 사업단의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점검 및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8. 특성화 사업비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개별 사업단의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및 자체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10. 특성화 관련 재정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신 설>	제5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궐석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궐석인 경우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내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특성화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성화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 2. 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평가 3. 성과지표 점검 및 달성여부 확인 4. 총장 및 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제7조(자체평가) ① 특성화추진위원회는 대학 특성화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산하에 자체평가위원회를 두어 각 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평가를 수행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내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특성화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성화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 2. 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평가 3. 성과지표 점검 및 달성여부 확인 4. 총장 및 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제8조 ② 실무위원은 행정직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제8조(실무위원 및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을 위촉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은 행정직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제9조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 및 개별학과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비밀의 유지) 위원회 구성원은 회의에서 논의된 기밀사항에 대해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특성화추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특성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성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되며,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위원급 또는 개별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필요에 따라 재임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특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특성화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학특성화 선정 심의 및 중점특성화 지정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사업단장 재청 및 운영위원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계약직원 및 연구원 채용에 관한 사항
6. 개별 사업단의 사업계획 심의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
7. 개별 사업단의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점검 및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8. 특성화 사업비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개별 사업단의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및 자체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10. 특성화 관련 재정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궐석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궐석인 경우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자체평가) ① 특성화추진위원회는 대학 특성화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산하에 자체평가위원회를 두어 각 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평가를 수행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내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특성화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성화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
2. 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평가
3. 성과지표 점검 및 달성여부 확인
4. 총장 및 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실무위원 및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을 위촉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은 행정직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 및 개별학과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비밀의 유지) 위원회 구성원은 회의에서 논의된 기밀사항에 대해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